

■ 최신 판례 ■

근로자가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이광선 변호사 | 백규하 변호사

근로자가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고의 남편인 망 이 사건 근로자(이하 '망인')는 1991년 9월에 서울 모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20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자살하기 전까지 재정팀장으로서 세금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6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 받았고, 재직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으며, 평소 밝고 유쾌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회사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은 점을 발견하였고, 2011년 11월 6일에 망인 외 3인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문책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망인은 결국 2012년 2월 1일에 정직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은 이후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을 보였던 망인은 2011년 11월 27일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망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그 결과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소외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후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자살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망인은 자살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서를 남겨놓지 않는 등 망인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4) 망인은 평소 밝고 유쾌하였고, 이 사건 전까지는 우울증 등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